

「수퍼플러스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- ① 수퍼플러스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)의 거래시에는 이 특약 및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, 『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』을 적용한다.
- ② 이 예금의 과목은 개인가입자에 대해서는 저축예금으로,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자유예금으로 한다.

제2조 이자지급의 방법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다음 기준일에 셈하여 원가일에 원금에 더한다. 그러나, 예금인출이 있을 때에는 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도 같이 지급할 수 있다.
 - 1. 이자계산기준일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제 3금요일
 - 2. 원가일 : 이자계산 기준일 익일
-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(또는 지난 원가일)로부터 원가(또는 인출)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각 입금(또는 인출)금액에 기간별, 금액별로 정한 당행고시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.
- ③ 은행은 전 항의 고시금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변경내용을 은행의 영업점에 1개월간 게시한다.
- ④ 「기간별, 금액별로 정한 당행고시금리」에서 말하는 금액이란 각 입금액이 아닌 기간 별로 유지된 예금 총 잔액을 말한다.

제3조 최저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저 가입 금액은 제한이 없으며, 언제든지 추가로 입금할 수 있다.

제4조 예금의 지급

- ① 이 예금은 선입선출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.
- ② 이 예금의 지급은 은행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종류 및 지급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<부칙>

본 약관은 2013년 1월 29일부터 적용합니다.

<부칙1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